



### 제6조(계약의 해지)

- 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 불가, 업무관련 자료 유출, 고의·중과실로 손해초래, 업무량 변화·예산감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근로자”가 무단으로 3회 이상 결근, 상습적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제7조(기타)

- ① “근로자”는 매일 일일근무상황부에 근로시간을 기재하고 “사용자”가 지정한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근로자”는 업무를 보조함에 있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자”나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실,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배상·보상책임을 진다
- ③ “사용자”의 업무의 변경 또는 업무사정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
- ④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자”는 “사용자”와 별도의 재계약 행위가 없을 시 자동으로 계약이 완전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⑤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⑥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근로기준법」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

### 제8조(계약서의 보관)

“사용자”와 “근로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5년      월      일

(사용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 :	(인)
(근로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 기간제근로자 등 계약구비서류

- 이력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각1부, 채용신체검사서(해당자) 1부,

# 서 약 서

본인은 중구 노숙인상담반으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중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출·퇴근시간 및 서울시의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4. 우리구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업무 수행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할 시에는 즉시 감독(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그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 해지 등의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5. . .

서약자 : (서명)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